계 약 서

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주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OOOOO 대표이사 ㅇㅇㅇ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하여 상호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다 음

1. 계 약 명 :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 기획 및 운영(기념영상 제작 포함)
2. 계약금액 : 원(VAT 포함)
3. 계약기간 : 계약일 ~ 행사일 익일까지

o 설치기한 : 행사일 전일까지 o 철거기한 : 행사일 당일까지

※ 행사 예정일은 12월 5일(목)이며,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계약내용 : “을”이 입찰참가시 제안한 내용 전반(붙임 : 제안서류 참조)

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일반사항 등은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2019년 7월 일

“갑” “을”
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
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
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

회 장 김 영 주 (인)

계약일반사항

제 1 조 (계약보증금)

"을" 은 계약보증금으로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/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"갑"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"갑" 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 2 조 (납품, 설치공사)

계약목적 물품은 "갑"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공사 후 "갑" 의 검사 및 검수를 득함으로써 납품 및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.

다만, "을"이 공사기한 이내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"갑"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때 이행 지체로 인하여 "갑"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제 3 조 (검사 및 검수)

(1) 계약물품의 검사 및 검수는 "갑" 의 지정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(2) "갑"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중간검사 및 납품 반입전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.
(3) 전 2항의 검사는 "갑" 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"을" 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로 인한 납품지연은 인정하지 않는다.

제 4 조 (지체상금)

(1) "을" 은 납품 기한 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익일로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납품해야 할 물품금액의 3/10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"갑"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(2) 전 1항의 사유가 천재지변, 노동쟁의, 사회적인 변혁 등 불가항력일 경우 또는 "갑" 의 사정 등 "을" 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"갑" 의 결정에 따라 당해기간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.
(3) "갑"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"을" 이 지급 이행하지

아니 할 경우 “을” 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.

(4) “갑” 은 “을”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, 이 경우 “을“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.

제 5 조 (대금의 지급)

“갑” 은 “을” 이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물품의 납품 및 공사를 완료하고 검사 및 검수를 득한 후 제반 서류를 첨부한 대금청구에 의거, 청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“을” 에게 대금을 지급한다.

제 6 조 수량(규격) 및 프로그램의 변동

(1) 제안서 상의 수량(규격) 및 행사 프로그램은 “갑” 의 사정에 따라 증감 및 변동될 수 있다.

(2) “갑” 의 요구에 의해 제1조의 사항이 발생할 때는 사전 상호 협의 (추가 견적 제시 및 승인) 하에 대금을 가감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조 (품질보증)

“을” 은 “갑” 의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및 공사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, 규격과 품질이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는 “갑” 의 지시에 따라 “을” 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손해배상)

“을” 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등으로 발생되는 “갑” 의 손해에 대해 지체상금은 물론 이로 인해 “갑” 의 손해 발생시 제반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제 9 조 (권리의무의 양도)

“을” 은 “갑”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10 조 (계약의 해지)

“갑” 은 “을”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

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(1) 지정된 장소 및 납품기한 내에 계약에 약정된 규격과 품질의 물품 납품 및 공사를 거부하는 경우

(2) “을”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지정된 장소 및 기한 내에 계약물품의 납품 및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(3) 기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(4) 상기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 11 조 (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)

“을” 은 공사착수 전후를 불문하고 안전사고 및 기존의 전기, 상하수도, 통신시설 등 일체 시설물의 파손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민, 형사상 문제는 일체 “을” 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“갑” 에게는 하등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.

제 12 조 (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)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“갑” 의 관련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 단,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상호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“갑” 의 해석이 우선한다.

제 13 조 (분쟁의 조정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.

제 14 조 (청렴계약 이행)

(1) 계약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,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.

(2) 계약당사자가 이를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거래단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